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48 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이광재・김성환・김승원

유정주 • 이용선 • 오영환

허 영ㆍ이형석ㆍ신정훈

서영교 · 김민철 · 윤영덕

박성준 · 홍성국 · 이병훈

이수진(비) · 홍기원 · 이용빈

서영석 · 소병훈 · 김회재

김종민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법인·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,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(이하 "기부 등"이라 함)할 수 있음.

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

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조세 감면) 국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4조의2(조세 감면) 국가는 박
	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
	기증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
	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
	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
	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
	<u>•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u>